

## 장 용 교수의 언론법제 연구 성과에 대한 재조명

이재진(한양대 신방과 교수)

### 1. 문제제기

단순히 동일 분야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언론학 1세대 연구자들에게 대해서 소개하고 재조명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의 연구 환경이 지금과는 너무 다르고, 접근방식에 대한 이해의 방향이나 정도에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 단지 언론법제 연구자라는 것과 같은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언론법제 연구의 기초를 닦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장 용 교수(이하 장 교수로 칭함)에 대한 소개와 재평가 부분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장 교수가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신문학과(현 신문방송학과)에서 1967년에서 1977년 사이에 재직하였으며(1977년 급환으로 사망), 일찍이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언론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는 것, 그리고 1969년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법 관련 본격 연구서인 <언론과 인권>을 저술한 정도로만 알고 있는 필자가 장 교수에 대한 올바른 재평가는커녕 제대로 된 소개도 쉽지 않았음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한다.

물론 이렇게 학문 제1세대의 업적을 기리고 이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요한 업적을 재발견하고 시대사적 의미에 맞는 재평가를 하는 것은 같은 학문분야를 이어가는 후학의 당연한 의무라고 사료된다. 제1세대 연구자들의 노력과 희생이 아니었다면 현재 회원 수가 1,500명이 넘는 거대 학회로 도약할 만큼의 발전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장 교수에 대한 소개를 위하여 장 교수가 재직했던 한양대학교에 남아 있는 기록과 당시에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신 분들의 증언, 그리고 한양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현 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에서 1993년 발간한 <언론학보>에 게재된 장 용 교수 추모 기념 학술회의와 간담회 내용을 수집하였다. 아울러 장 교수의 연구 업적을 조사하기 위해 도서관과 연구소 등을 통해 과거 언론관련 간행물 등을 최대한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게으름과 무능력으로 장 교수에 대한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조사를 하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해 혹시라도 장 교수에 대해 누를 끼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장되게 장 교수를 미화하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해 나가면서 언론학 1세대의 학문발전예의 기여가 참으로 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다. 아울러 언론법제 분야의 초기 연구자

로서만 알아왔던 필자에게 연구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일깨워 주기도 하였다. 물론 필자가 아닌 다른 언론법제 연구자가 장 교수를 재평가 한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달라 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질적 수준이나 시대적 의미 등을 달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재평가를 하더라도 이견이 발생하지 않을 만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고찰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에피소드 중심으로 단순히 당시의 현황을 기술하는 정도의 재평가 작업이 아닌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장 교수의 학문적 연구물을 추적하여, 일간 신문에 실린 칼럼이나 사설 또는 단행본 중의 한 챕터나 일부를 제외하고, 석사논문이 나온 1958년 이후부터 타개하기 이전 해인 1976년 까지 저술한 연구 중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20 건의 저작물을 수집하였다. 물론 탐색이 완전하지 못하고 기록이 전산화 되지 못한 탓에 더 많은 저술이 있었을 수 있으나 이를 완전히 확인하지 못하였다. 장 교수는 당시 대학에서 교편을 잡는 동시에 언론사의 논설위원 등 저널리스트로 활약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분량의 다양한 형태의 글을 게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술 하는 바와 같이 장 교수의 연구들은 대부분 학술적,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논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드러내서 주장하고자 하는 평론이나 칼럼의 성격을 띤 글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은 객관보도의 문제에서 신문의 책임과 질적 문제, 기자등록제 문제, 신문의 품위문제(윤리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저널리즘의 쟁점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언론법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에서부터 필화사건의 요인문제, 명예훼손법의 문제점, 외국과의 언론법 비교, 음란물 규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언론법제 연구의 경우에는 이전 언론관련 법 규정의 문제점을 다루던 법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미국의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고 한국의 언론법제를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미국적인 언론학 개념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례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언론법 분야에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알 권리에서부터 프라이버시권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연구의 장을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장 교수의 연구 업적물의 핵심적 내용은 그의 대표 저서인 <언론과 인권>에 모두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장 교수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성찰은 이 책을 중심으로 시도하고자 하였다.

## 2. 학자이자 저널리스트로서의 장 용 교수

비록 언론학계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장 교수는 언론학자로서 당시에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가장 먼저 귀국하였으며, 미국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본격적으로 소개하여 우리나라 언론학의 기반을 조성한 사람들 중 한 분이다. 실제로

장 교수는 우리나라 언론학계가 자리를 잡고 현재의 위치로 발전하기 위한 길목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제1세대에 속하는 학자이면서 제2세대로 변화해 가는 길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점은 제1세대에 속하는 학자들과의 학문적 접근 방식에서의 차별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언론학계 제1세대에 속하는 학자들, 특히 외국에서 유학을 마친 학자들의 대부분은 공시학(publizistic) 또는 전통적 신문학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연구를 한 반면, 장 교수는 미국식의 저널리즘이론과 저널리즘 법(Journalism Law)을 강의하였고, Q방법론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연구논문을 쓰기도 하였다.

장 교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1993년 2월에 한양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에서 개최한 기념학술 세미나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장 교수에 대한 추모의 정을 담아 장 교수의 연구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당시 한병구 교수, 강현두 교수, 차배근 교수, 그리고 유재천 교수가 주제별 발표를 했고, 이에 대한 토론은 김동철 교수, 서정우 교수, 정진석 교수, 오인환 교수, 이상철 교수, 김지운 교수, 임상원 교수, 구종서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명구 교수, 김승현 교수, 최현철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학술회의와는 별도로 김종량 부총장, 정대철 교수, 최창섭 언론학회장, 이신복 교수, 언론인 박권상 등이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학술회의와 간담회 참석자들의 면면을 살펴본다면 당시로선 대단히 큰 규모의 행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학술대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장 교수에 대한 특징적인 약력과 학문적 업적에 소개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 교수는 영문학자이자, 저널리스트 그리고 언론학자**로서의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그는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으며(동국대), 육군사관학교와 동국대에서 영문학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영문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그의 연구에서는 인문주의적 냄새가 풍긴다. 즉 그의 연구들 속에서 인문학적 접근 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저널리스트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그는 <경향신문>의 논설위원, 월간 <신세계>의 발행인 겸 편집인, <일요신문>의 편집국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일보>의 논설위원을 지냈다.

학자로서 장 교수는 현재 한국언론학회의 모태인 ‘한국신문학회’(이하 신문학회)에 적극적으로 간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60년 신문학회가 창립되어 광복산 교수가 초대 회장을 맡았을 당시 언론인 박권상과 함께 간사로 참여하였으며, 그해 창간된 <신문학보>의 편집위원으로 1970년 제3호가 나올 때까지 활동하였다(제2호는 창간호가 나온 이후 9년 뒤인 1969년에 출간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 교수는 학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sup>1)</sup> 한국신문학회 창립 이래로 얼마나 오래 이사직을 맡았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적어도 1971년까지는 이사로서 학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내 최초로 외국에서 신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였다. 기록이 제

1) 저널리즘 영역에서는 재산 미국직업신문동지회(SDX)라는 모임의 지회장을 맡아서 활동했다.

대로 남아 있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저널리즘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장 교수 이전에 박사학위를 한 연구자들이 있기는 했으나) 최초의 한국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58년과 1967년에 미주리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다. 그는 박사 학위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일본과 독일계 학풍의 영향을 많이 받은 언론학계에 미국식의 학풍을 도입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개념을 처음 도입하였다.**<sup>2)</sup> 장 교수는 미국에서의 유학을 통하여 당시로서 생소했던 국민의 ‘알 권리’ 개념을 공부하고 이를 우리 언론학계에 소개하였다. 그는 언론보도가 객관적이어야 하는 것도 국민의 알 권리 때문이라고 보았다. 언론의 자유도 국민의 알 권리에 기초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식의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이의 법적인 수용을 주장하였다. 그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관심은 이후 그의 언론법 관련 연구를 집대성한 <언론과 인권>의 근간이 되었다고 하겠다.

넷째, **언론학 연구에 Q방법론을 도입하여 연구에 시도하였다.** 강현두(2002)의 발표에 따르면 장 교수는 기존의 R방법론과 차별적인 Q방법론을 도입하고 이를 소개하였다고 한다. 그는 Q방법론을 통해 2편의 논문을 저술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에는 Q방법론이 너무 앞서가는 방법론으로 인식되어 널리 수용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전통적 신문학 교육(curriculum)을 현대의 커뮤니케이션학 교육으로 확대,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당시 가장 널리 이용되던 기본개론서인 Introduction to Mass Communication을 박권상과 함께 번역하여 <메스컴론>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그때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란 개념도 새로이 도입하여 소개하였다.

요약하자면, 장 교수는 미국에서 석, 박사를 한 후, 한양대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미국식 저널리즘의 시각에서의 중요한 이론적 접근이나 비교언론법적인 접근 방식을 이용한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이처럼 인문학적 소양과 언론인으로서의 경력, 그리고 사회과학으로서의 신문학의 배경을 두루 겸비한 학자로서 마치 캐나다의 언론학자 마셜 맥루한(McLuhan)을 연상하게 하는 면이 있다.

이러한 경력에 근거하여 장 교수는 여러 편의 다양한 형태의 논문과 저술서를 남겼다. 아래 <표 1>은 그의 저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20편 선택한 것이다. 학자로서의 학문적 업적이나 기여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저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얼마나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문과 저서를 썼는가를 통해서 학자로서의 면모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

2) 국내 저널리즘에서 알 권리 개념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부터이다(이재진, 2006)

<표 1> 장 용 교수의 연구업적

|    | 논문(저서) 제목   | 발표일     | 발표지                  | 비고             |
|----|---|---------|----------------------|----------------|
| 1  | Survey of Korean newspapers: Study of Rhee and the press. | 1958.6  | 석사논문                 |                |
| 2  | 「쟁거」 재판과 우리의 언론   | 1958.11 | 동시대보                 |                |
| 3  | 국제정치와 방송  | 1959.3  | 방송(22권)              |                |
| 4  | 미국 신문학 교육과 미조리 신문대학                                       | 1960.봄  | 매스컴연구(2권)            |                |
| 5  | 컴퓨터이론과 객관적 보도   | 1960.   | 신문학보(1호)             |                |
| 6  | 신문학 교육에 대한 제언   | 1962.2  | 신문 논조 평가             |                |
| 7  | 신문인의 책임과 신문인의 질   | 1962.봄  | 신문연구(3권 1호)          |                |
| 8  | 신문의 품위  | 1962.여름 | 신문연구(3권 2호)          |                |
| 9  | 필화사건의 발생요건  | 1963.1  | 신세계(1권 3호)           |                |
| 10 | 신문의 마성과 신문위력의 한계  | 1963.6  | 민족과 자유와 언론 (서울: 일조각) | 고재욱 선생 화갑기념논문총 |
| 11 | 매스 미디어의 기능과 특성  | 1963.9  | 공보(9호)               |                |
| 12 | 매스컴론(공역서)   | 1963    | 을유문화사                |                |
| 13 | 선거와 매스컴의 영향   | 1967.6  | 세대                   |                |
| 14 | 7점 양극 척도에 의한 신문평가   | 1967.여름 | 신문평론                 |                |
| 15 | 논평의 논리와 윤리  | 1968.여름 | 신문평론                 |                |
| 16 | Readings in Communications(편저)                            | 1968    | 송문사                  |                |
| 17 | 언론과 개인법의 침해   | 1969.5  | 한양대학교 30주년 기념논문총     |                |
| 18 | 언론과 인권(저서)  | 1969    | 선명문화사                |                |
| 19 | 각국 기자등록제의 역사적 고찰  | 1972    | 신문평론(봄/여름)           |                |
| 20 | 외설의 한계와 판단기준  | 1975    | 신문평론(1월호)            |                |

\* 굵은 표시는 언론법제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저술임.

장 교수의 언론학자로서의 학문적 업적의 시작은 미주리대학(Missouri-Columbia)에서 받은 석사학위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58년 “Survey of Korean newspapers: Study of Rhee and the press”라는 논문으로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논문을 구입할 수 없어 그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으나 제목을 통해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의 언론정책과 이에 대한 언론인들이나 언론사의 반응을 연구한 것이라 여겨진다. 장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 이후의 저술들을 통해 추정해 보건데 아마도 언론의 자유 논의를 주로 다루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 이후에 나온 최초의 글은 1960년 <신문학보> 창간호에 게재된 “컴퓨터이론과 객관적 보도”라는 논문이다. 여기서는 장 교수는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를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개념에 근거하여 내리고 있다. 즉 커뮤니케이션은 구조화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비트겐슈타인의 同族的類似性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메시지의 중요성을 고찰하였으며 동시에 보도에 있어서의

객관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보도의 객관성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즉 언론에 대해 객관적 보도의 봉사를 요구할 권리가 국민, 즉 일반 독자에게 있는 만큼 민주적 언론보도에 있어서 객관성의 중요성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언론 보도 기관의 경우 뉴스 보도, 사실 및 풍자와 시사 등을 엄격히 구분하여 커뮤니케이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을 통해 볼 때 장 교수는 이미 1960년에 객관적 보도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언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 교수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63년에는 언론학회 간사로 같이 활동한 박권상과 함께 에머리, 올트 그리고 에기(E. Emery, P. H. Ault & W. K. Agee)의 <Introduction to Mass Communication>을 번역한 <메스컴론>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이 책의 번역을 통해 장 교수는 미국식의 언론학 연구와 방법론은 소개하였다. 즉 우리 학계에 현대적인 미국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접목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 교수 등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독일과 일본 중심의 언론학 경향이 미국 쪽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장 교수는 미주리대학 박사과정 중에 저술한 한 연구에서 미국의 언론자유와 전통과 아시아 국가들의 언론자유와 전통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Chang, 1966). 그는 “A comparison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the freedom of the press in four nations: America, Japan, Korea and Philippines”이라는 제목의 미발행 논문에서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이 기본권을 개인이 원하는 바대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자유와 함께 중요한 것은 정부가 모든 국민들이 경제, 사회, 및 정치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모든 정보(information)가 제공되도록 이를 알리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알 권리는 모든 국민들이 정부의 권력구조를 점검(check)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공공문제를 알려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서 파생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국의 이념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사회적 현상과 철학적 사상이 초기에 없었다면 자유와 언론 및 출판 자유의 이념은 오늘날 미국의 매스커뮤니케이션계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미국적 신념은 미국에만 머물지 않고 제2차 대전 이후 국경을 넘어 다른 신생 후진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는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위한 언론인들의 노력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위의 연구가 장 교수의 언론법제 연구의 초석을 놓았다면, 이러한 논의를 확대 발전시키고 더욱 구체적으로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면서 미국식의 언론법 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논문이 1969년 <신문학보> 제2호에 실렸다(21~40쪽). “커뮤니케이션과 명예훼손”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장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그의 언론법제 연구의 지평을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가장 큰 특

장은 우리나라 명예훼손 현상의 쟁점들을 분석하면서, 이를 미국에서의 유사한 사건(판결례)을 통해 비교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장 교수는 당시 우리나라 신문들의 보도행태를 꼬집는다. 예를 들어 피의자의 경우에도 ‘진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례, 그리고 기사 제목(표제)의 한계와 법적 제재의 문제점 등을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진실성’과 ‘공익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불리하다는 점을 설파하였다. 특히 비교적인 측면에서 미국 언론에게 유리하게 판결된 다양한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우리 판결에서 지적되지 않는 여러 요건들이 미국에서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이를 우리가 적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장 교수는 이 논문에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욕죄에 대해서도 쟁점을 제기하였다. 그는 형법상의 모욕죄(제311조)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 있어 모욕죄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연히 모욕의 의사를 표시하는 한 누구도 그것을 인지하지 않아도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점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장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모욕을 명예훼손의 일부로 인식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모욕죄를 점차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libel)과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선상에서 판단하려는 법적인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면서, 우리 법원은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 유포된 사실이 여러 사람을 거쳐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한 대법원 판결에서 법원은 유포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며, 자신이 명예훼손의 의사로 자진하여 사실을 유포한 일이 없고, 상대방의 물음에 대답했을 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상고이유를 부정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공공연한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미국의 유사한 판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미국과 같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sup>3)</sup>

표제와 관련 한국 판례는 미국과 같이 표제를 전체기사와 연관시켜 심리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소위 <박경원 대 경향신문> 사건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허위의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으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의 조각 조문의 취지를 ‘보도전체는 물론 그 보도의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우리 법원은 기사의 불온 동기가 허위의 기사뿐만 아니라 표제 속에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시사한다고 보았다.

3)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망자의 경우는 친고죄)인 반면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적용된다.

또한 공갈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점에 있어서 소위 박경원 사건의 판결요지에 따르면, 공갈적인 비난이 결과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의 여부, 원고의 범죄 행위를 규명한 것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가의 여부, 그리고 사회법익 대 개인 법익과의 우열을 따진 후에 사건을 심리 판단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이라고 보았다.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양국의 판례를 비교하여 본 결과 유사점이 많은데 예를 들어 공산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양국에서 모두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면책사유에 관한 한 양국의 해석상의 폭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김종형 대 이강순> 사건을 분석하면서 모욕이나 욕설을 자아내게 한 과거 행실이나 욕설의 허구성 여부 또는 욕설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 한국 법원은 심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생활 침해의 법리도입의 필요성도 계속해서 제기한다. 즉 개인의 사적인 사실과 관련한 소위 <김진채> 사건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이를 사생활 침해로 다루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개척 분야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비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판결상 그다지 고려치 않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를 중요시하고 판결에 반영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미국의 경우 비난적인 용어의 해석과 환경 및 피해자의 행실 등을 모두 결부시켜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다.<sup>4)</sup>

장 교수는 1972년 <신문평론> 40호(봄/여름)에 ‘각국 기자등록제의 역사적 고찰’이라는 평론을 게재했다. 그는 먼저 역사적으로 각 국에서 언론을 어떠한 방식으로 통제해 왔는가를 고찰하였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 혁명 시기부터 언론을 통제하고, 국가총동원 체제를 달성하기 위해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전쟁목적수행 내지는 장기집권이란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기자등록제가 이용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통제는 독일의 나찌 통치 기간에도 실시되었으며, 일본도 이를 실시한 바 있는데 기자등록제는 실제로는 언론탄압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친독 언론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등록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즉 당시 정부가 언론을 바로잡는다고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실제로 언론탄압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버기자 근절 등의 명분으로 그리고 언론보도의 개선과 언론계의 자율적 정화를 위한 방편으로 행해지는 기자등록제를 비판하였다. 장 교수에 따르면 기자등록제 실시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언론정화를 위한 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장 교수의 이러한 지적은 당시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그의 언론법 연구는 그가 타개한 1977년 이전에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1969년 <신문학보> 논문의 모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박사논문의 제목과 내용은 아쉽게도 확인되지 않았다. 교수는 1967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그 논문이 어떠한 내용의 것이었는지 아쉽게도 검색하지 못했다. 좀 더 세밀하고 광범위한 검색이 요구되며 본 연구의 미비점이기도 하다.



장 용 교수의 마지막 저술로서 선택된 것이 바로 1975년 1월호 <신문평론>에 실린 ‘외설의 한계와 판단기준’이다. 여기서 장 교수는 우리나라 법원의 외설(음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음란물에 대한 개념 정의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외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의 근거를 조만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 교수는 외설적 표현의 경우라도 이를 모두 규제해서는 안 되며(물리적 이유) 적절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3. <언론과 인권>에 나타난 장 용 교수의 언론법 연구의 특성과 철학

지금부터 정확히 40년 전인 1969년에 저술된 <언론과 인권>은 언론학 교수가 펴낸 최초의 본격적인 언론법제 연구서이다. 이 책은 국내외의 언론법 관계 <참고 문헌 서지>까지 첨부하여 당시까지의 연구로는 가장 깊이 있는 작업을 실시한 저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책은 전체 465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로서, 민주주의의 기초, 한·미 양국 헌법상의 언론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보장의 한계, 한·미 양국 헌법 판례상의 제한과 보장, 명예권과 명예훼손의 본질 및 범주, 언론과 개인법의 침해, 방송과 명예훼손, 언론과 사생활의 권리 등 10부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는 기존의 법해석적인 방식을 원용하되 법조문에 대한 해석의 문제보다는 미국식의 판례분석을 통한 함의도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책은 적어도 언론법적인 측면에서 깊이가 있고 다양한 내용과 쟁점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인 나온 해인 1969년에는 언론법제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었다고 평가된다. 장 교수가 스스로 지적하고 있듯이 언론의 자유와 책임문제는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발표된 단편 논문도 많이 있으나, 이를 중심으로 양자의 한계와 국가적 통제를 골자로 한 언론의 자유 및 국가법익, 사회법익 및 개인법익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룬 문헌은 당시에 거의 찾아 볼 없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선진 외국과 비교한 문헌이라고는 전무한 시절이었다.

장 교수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책에서 한국과 미국의 언론법 쟁점들을 비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양국의 국가법익 대 언론의 자유 및 개인법익, 즉 명예법익 대 언론의 자유 문제를 비교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 비교연구는 언론학자의 입장에서 언론의 자유 대 국가법익 그리고 개인법익 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그 한계와 제약을 비교 검토 하였으며, 나아가서는 언론의 자유와 타 법익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양국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의 핵심은 머리말과 서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모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부정되는 곳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존재할 수 없으며 독재자와 국민의 알 권리는 상극적인 입장에서 계속 암투를 하게 된다... 독재와 언론의 자유가 양립할 수 없다... 알 권리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의 파멸을 초래한다... 따라서 민주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언론인이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투쟁하면서까지 수호코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일이며 매스커뮤니케이션 산업에 종사하는 언론인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강력히 주장하고, 이를 수호하는 것은 절대로 언론계를 위한 이기적인 목적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글을 통해 볼 때 장 교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며 언론의 자유를 위한 전제라는 이론에 입각하여 한국과 미국 양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제한의 한계를 비교한 후 국가이익 대 언론의 자유 및 개인법익 대 언론의 자유를 양국 법률에 비추어 비교하여 보았으며, 언론사범 관계를 국가법익을 중심으로 역사적 판결경향을 다루었고, 끝으로 개인법익의 하나인 명예권과 사생활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언론의 침해와 이에 대한 법원 판례를 6개로 분류하여 비교 고찰하고 있다.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각 부(장)별 내용의 핵심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1부 ‘서론’에서는 언론자유 의미, 언론의 사회적 책임 의미, 언론의 자유가 사회적 및 국가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과 비중,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언론의 자유와 개인법익, 사회법익, 그리고 국가법익간에 적절한 비교형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제2부 ‘민주주의의 기초’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의와 의미를 미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알 권리에 근거한 언론 자유를 적절히 보장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3부 ‘한·미 양국 헌법상의 언론자유’에서 장 교수는 미국과 한국에서의 언론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의미와 그 차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의 범주와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상의 헌법적 보호의 범주 간에는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미국과 한국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추적하여 이를 상호비교하면서 분석하였다.

제4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보장의 한계’에서는 제3장보다 미시적인 시각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제한되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장 교수는 각 국의 언론을 제한하는 법률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언론 출판의 규제가 어떻게 실시되었는가를 비교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언론을 규제하는 법들이 점차 사라져 간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양한 법률을 통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통제해 온 역사가 있음을 탐색하고 있다.

제5부 ‘한·미 양국 헌법 판례상의 제한과 보장’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과 한국에 있어 오늘날의 헌법적 보장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다양한 판례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건국 이후 존재하였던 다양한 언론통제법이 어떻게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폐지되었으며 현재 미국 전역에 걸쳐 수정헌법 제1조가 적용될 수 있었는지를 2차 대전 전후와 1953년 이후로 구분하여 대표적인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까지의 대표적인 언론통제법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소개하고, 미군정기부터 당시까지 나온 판결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언론통제가 이루어졌는가를 살폈다. 미국의 경우 국가법익에 대한 강조가 점차 약화 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권력의 언론자유에 대한 보장에 있어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6부 ‘명예권과 명예훼손의 본질 및 범주’는 개인적 이익과 언론 자유 사이의 이익형량이 어떻게 이루어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살피고 있다. 미국에서의 명예훼손법의 경우 1964년 <설리반 사건>(New York Times v. Sullivan)의 영향으로 공직자에 대한 보도가 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등을 통해서 명예훼손법이 대단히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와 같은 언론의 위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7부 ‘한·미 판례의 비교’에서 장 교수는 논평에 있어서의 명예훼손의 쟁점, 집단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출판물에 의한 반복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책임문제, 그리고 표제가 명예훼손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와 모욕과 명예훼손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는지를 분석했다. 실제로 제7부가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논평’이 면책사유로 인정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며, ‘표제’나 ‘공갈적 표현’의 경우 미국은 전체의 일부로서 판단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독립적인 요건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미국의 경우 반복적으로 명예훼손이 일어나는 경우 single publication rule에 의해서 책임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욕’의 경우, 미국에서는 이를 형사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점차 명예훼손과 분리된 영역으로 이를 보려는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모욕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한국법은 대륙법계와 비슷하나 어느 모로 보든 일본법에 더 가까우며, 미국과 비교한다면 명예권이나 훼손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한 풀이가 규정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법과 다르다. 구제수단이나 면책특권도 미국에 비하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 미국에 비해 위약하며 언론기관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영미법과 비슷한 점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증명’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그것도 공직자에 대한 논평의 경우에는 다르다고 보았다. 한국법상 구제수단은 영미법과

같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배상자의 생계를 고려한 경감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색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sup>5)</sup>

제8부 ‘방송과 명예훼손’에서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방송 관련법들이 어떻게 제정되고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미국의 경우 관련 판결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법리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결례가 없어서 한국방송윤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서 현재의 경향을 살피고 있다. 방송의 경우는 매체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쇄매체와는 달리 제한적인 방식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점은 양국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방송보도가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인가 등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제한의 정도를 결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고려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9부 ‘언론과 사생활의 권리’에서 장 교수는 미국에서의 사생활권(Privacy)의 보호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이를 어떻게 언론의 자유와 이익형량을 하고 있는가를 밝히면서 16건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였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에도 사생활 개념을 빨리 도입하여 개인의 사적인 비밀과 자유의 부분은 명예훼손과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10부는 ‘결론’으로 1부에서 9부까지의 미국과 우리나라의 언론법을 비교한 결과를 축약하여 설명하고 언론의 자유와 국가법익, 사회법익, 그리고 개인법익을 적절하게 비교형량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결론을 통해서 볼 때 장 교수는 이 책에서 크게 몇 가지를 천명하고 있다. 먼저, **언론의 자유를 모든 개인적 기본권의 토대로** 판단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면 여타 개인의 자유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는 미국에서 언론자유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로 인식되는 1745년 <존 피터 쟁거>(John Peter Zenger)사건<sup>6)</sup>을 예를 들면서 미국과 같이 200년 이상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역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몇 십년간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언론자유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언론의 자유는 무조건적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전제로 한 언론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때 언론의 자유는 단순히 취재, 보도, 평론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① 정보의 자유를 의미하며, ② 정보소통의 자유가 있어야 하며, ③ 정보소통의 자유를 원만히 달성시켜 주는 언론매개체의 자유를 의미한다.<sup>7)</sup>

5) 제7부는 구체적인 법원의 판례와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사건을 예시하고 이를 미국과 비교적으로 연구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언론법 연구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 올린 연구라고 할 수 있다.

6) 이 사건은 진실의 면책사유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이재진, 2002).

7) 이러한 알 권리에 대한 주장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새로운 것이라고 여겨진다. 알 권리라는 용어가 처음 신문에 나온 것은 1964년이며 1961년 신문윤리강령 개정 시에 삽입되었다고 한다. 이전에 알 권리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명확치 않으나 1960년에 출간된 <신문학보> 창간호에서 장 용 교수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객관적 보도가 필요하다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아마도 장 교수의 알 권리 주장은 언론학계에서는 거의 처음 이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셋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는 독재국가에 속하고 국민의 알 권리는 언론이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가 먼저 지켜져야만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언론의 자유와 함께 언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언론은 책임성을 강화하여 언론의 자유와 여러 사회적 이익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또는 국가적 이익들이 어떻게 비교衡量이 이루어지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장 교수는 비교법적인 연구를 도입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민주국가의 자유는 '~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에로의 자유' 더 나아가 '~을 위한 자유'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은 제반 현상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행동의 결정을 할 수 없고 정부 및 사회의 운영을 올바르게 감시하거나 제동을 걸 수 없게 된다. 그런데 만일 정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보의 운영을 제지할 수 있는 것이 현대 민주사회의 언론기관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매스 미디어가 자유롭게 보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이 단지 정부의 확성기 노릇을 하게 된다면 독재국가의 '얼치기' 언론기관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언론과 국가법익 및 개인법익의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매스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국가법익 대 언론의 자유 문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정책을 통해 민주주의 기조에 입각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면 진정한 언론의 창달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둘째, 개인법익을 중심으로 한 언론의 침해관계를 원만히 조절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길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법원은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언론을 다스림에 있어, 비판 또는 침해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질 때 커뮤니케이션 상황, 면책특권의 한계 등을 참조해야 하는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바 언론의 자유관계를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셋째, 사생활의 권리와 언론 문제는 현행법이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조문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이니, 법조계는 이 분야를 개척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인 서신의 검열, 전화도청, 사사(私事)의 비밀침해 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이론의 개척과 발전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넷째, 언론 윤리 기관은 어디까지나 자율적 심의기관으로서 언론계의 자질과 품위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는 만큼 언론 윤리기관은 재판소를 대신하는 식의 역할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은 한 언론과 개인법익 관계 내지는 국가법익관계에 혼선을 빚기 쉬우며, 나아가서는 언론과 법질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섯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의 자유와 논평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축시키거나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자유는 언론·보도매체의 전유물도 아니며 언론·보도매체를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입각한 공개사회와 민주국민을 위하여 부여된 실체(entity)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의 속성과 마찬가지로 개인법익과 사생활의 권리는 커뮤니케이션 대상자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수신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사회를 보호하는 실체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한다.

#### 4. 마치며

비록 의도했던 바와 같이 장 교수에 대한 입체적 분석은 되지 못했지만 간략히 우리나라 언론법제 연구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장 용 교수에 대한 소개와 연구업적 탐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구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저서 <언론과 인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 연구자의 시대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학문 제1세대에 대해 성찰하고자 하는 작업이 대부분 약력에 대한 소개와 기존의 논문과 책의 핵심적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정도에 그치는 단순한 작업이었다는 것은 본 연구 갖는 치명적인 한계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작업은 비록 단순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지난 50년 정도의 언론법제 연구가 어떠한 경로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 발전해 왔는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용 교수의 업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연구가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적인 연구였다는 것이다. 물론 언론법제를 전공한 전문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장 교수의 업적의 중요성이 다소 과장되어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업적을 약 50년이 지난 오늘날의 언론학 연구들과 비교해보면, 그 연구 수준이 오히려 높으면 더 높았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와 판례들을 집대성한 <언론과 인권>은 언론법 분야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연구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연구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에는 언론법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없었던 관계로 그의 연구가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즉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언론법제 연구자들이 다수 존재하였다면 그들 사이의 학문적 상호작용과 비교 검증을 통하여 언론법제 연구 영역의 발전에 훨씬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판례연구를 우리 언론법제 연구에 도입한 것은 장 교수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판례를 소개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유사한 판례와 비교하여 서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지, 더 나아가 사회과학적인 고찰을 통해서 이론화 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장 교수가 언론학자로서 활동하던 시절(1958년~1966년)은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은 시대였음을 감안할 때 그의 연구업적이 그 엄밀함과 자료의 수준 등에서 모범적이라고 보이는 한편, 미국과 같이 200년 동안 축적된 풍부한 판결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과학적인 분석 기법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언론법 연구방법이 소개되기 이전으로 법해석적인 측면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은 그의 연구에 있어 옥의 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 교수의 업적이 단순히 예전 시절의 연구로서 대단하다는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발전적인 언론법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은 후학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현재 언론법제 연구는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유의선, 2009).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하여 언론법제의 외연을 넓히고 법학자와 언론학자간의 교류를 통하여 질적으로도 심도 깊은 연구들을 해 나가고 있다. 이들의 연구의 전통과 연속성을 더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된 형태로 언론법제 연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온고지신의 자세가 요구된다. 언론법제는 언론학 영역에서 당당히 독립된 연구 분야로 인정받고 있으나 연구자의 수나 연구 수 등에서 타 영역에 비해 열세라고 할 수 있으나, 장 교수가 그 시대에 기울였던 노력을 앞으로의 언론법제 연구에 쏟아 부는다면 우리나라 언론법제 연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 참고문헌

- 성낙인(1994). 한국 언론법제의 특징과 문제점. 『언론중재』, 통권 50호(봄), 6~20.
- 유의선(2009). 미디어 법제 50년. 언론학회 50년사 콜로키엄 발표 논문, 2009. 3. 12, 배재학당.
- 이재진(2007). 한국 언론법제 교육의 현실과 쟁점. 『언론중재』, 통권 100호 (겨울), 4~20.
- 이재진(2006). 언론 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 이재진(2002). 한국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양대 출판부.
- 장 용(1975). 외설의 한계와 판단기준. 『신문평론』, 1975년 1월호.
- 장 용(1972). 각국 기자등록제의 역사적 고찰. 『신문평론』, 40호(봄/여름),
- 장 용(1969). 「커뮤니케이션」과 名譽毀損. 『신문학보』, 제2호, 21~40.
- 장 용(1969). 『언론과 인권』. 서울: 선명문화사.
- 장 용(1963). 신문의 마성과 신문위력의 한계. 『민족과 자유와 언론』 (고재욱 선생 화갑기념논총). 서울: 일조각.
- 장 용(1963). 필화사건의 발생요건. 『신세계』, 1권 3호.
- 장 용(1962). 신문의 책임과 신문인의 질. 『신문연구』, 3권 1호(봄), 126~133.
- 장 용(1962). 신문의 품위. 『신문연구』, 3권 2호(여름), 160.
- 장 용(1960). 커뮤니케이션과 객관적 보도. 『신문학보』, 1호, 41~60.
- Chang, Yong (1966). A comparison of the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the freedom of the press in four nations: America, Japan, Korea and Philippines. Unpublished Material,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Chang, Yong (1958) Survey of Korean newspapers: study of Rhee and the press. M.A. Thesis of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